

우리동네작은도서관

수신자: 양산시 문화관광과, 양산시 감사관실, 양산시의회, 부시장실

경 유: 양산시 문화관광과 팀장님, 주무관님

제 목: '양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연임 회신에 대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에서 보내온 문건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지난 6월 2일 본 위원이 보낸 문건을 다시 보내며 아래와 같이 재차 질문을 드립니다.

가. 본 위원은 6월 2일 기금심의위원 관련 문건을 양산시 문화관광과로 보냈으며 회신을 6월 19일 메일로 받았으며 확인은 오늘(6월 21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국가 기관이나 관공서 민원에 대한 회신은 늦어도 15일 이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일이 지난 후에 회신이 왔고, 이또한 회신을 했다는 어떠한 언질을 받은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틀이 지난 오늘에야 메일을 열어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무척 성의없는 처사에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나. 본 위원은 2021년 기금심의위원이 될 당시 공개 모집에 응하였으며, 그때 당시 함께 위촉 위원으로 되신 분과는 다르게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지는 모르나 대학졸업증명서(동아대 독어독문학), 대학원 학위증(경북대 문학치료학 석사), 도서관고유번호증(작은도서관 관장), 각종 자격증(교사자격증, 문학치료사, 독서심리상담사, 독서지도사 등)과 경력증명서(양산문인협회 편집국장)까지 양산시 문화관광과가 추가로 요구하여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보름 가까이 지난 후에 위촉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자격 여부는 충분히 검증할 거친 것으로 압니다.

다. 양산시 문화관광과가 보내온 문건(시행 문화관광과-17038/ 2023. 6. 19.)에 의하면 "조례 제6조 4항 본문은 위촉직 위원은 두 차례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이지, 위촉직 위원에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임을 보장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의 근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세 차례 팀장과의 통화에서도 조례는 임의 유권해석보다 법제처로 문의를 해 달라고 요청했음)

라. 본 위원은 이미 양산시에 폐기물 관련 위촉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바, 작년 10월에 2년 임기가 끝났으며 담당 공무원이 조례에 의해 연임할 수 있기때문에 연임 의사를 물어왔고, 연임 의사를 밝혔으며 통상 관례로 자동 연임이 되었습니다. 같은 양산시에서 조례가 정한 심의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이렇게 다른 임의방침이나 임의규정

을 들이대어 조례에 언급하고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불가입니다.

마, 본 위원의 2년 임기는 이번 6월 30일까지이며, 연임이 가능한 상황에서 연임 의사를 전혀 묻지도 않고 심의위원 추가 위촉 공고(2023. 5. 30.)를 냈기에 담당 주무관과 담당 팀장에게 연임의사를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같은 이해불가의 방침에 대하여 정식 공문(2023. 6. 2.)을 통해 질의를 했으며, 20여일 가까이 답을 받지 못해 담당 과장과 소통을 위해 전화를 두 번(1차는 메모 남김, 2차는 팀장이 대신 받아서 전한다고 함)이나 했으나 담당 과장은 소통을 회피하였습니다.

바. 시의회가 조례를 만들 때, 심의위원 위촉에 대한 근거를 두는 것은 심의위원이 시민의 대표로 시집행부가 진행하는 일을 견제하고 제대로 검증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 위촉도 아주 꼼꼼하게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도 조례가 엄연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임의 규정이나 임의 방침을 내세워 조례를 넘어서는 유권해석으로 연임 규정을 제한하는 것은 전국 어느 시도 어디를 찾아봐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 이것은 본 위원 개인에 대한 사적 감정이 개입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합리적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과 함께 기금심의위원 연임 임기를 마친 모 대학교수는 심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출석을 한 적이 없음에도 자동연임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임기 2년 동안 단 한 번의 결석도 안 했으며 연임을 하겠다는 확실한 의사를 전화로, 문건으로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임기 중인 위원과 어떠한 상의도 없이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한 개인을 향한 횡포로까지 보여집니다.

3. 본 위원은 양산시 담당 부서의 이같은 일방적이고 황당한 결정에 대해 중앙의 주무부처는 물론 조례를 제정한 양산시의회, 감사원, 국민권익위, 인권위에도 양산시가 보내온 문건을 참고로 민원을 넣어 확실한 조례해석은 물론 담당 공무원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 붙임 1. '지역문화진흥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연임에 관하여(우리동네 2023-3/2023. 6. 2.)
2. 질의에 대한 회신 양산시 공문(시행 문화관광과-17038). 끝

우리동네작은도서관



관장 허문화(010-2947-4475)

시행 우리동네 2023-04 (2023. 06 21.)

우 50507 양산시 상북면 삼계1길 6 /

전화 055-375-2681 / janssori@hanmail.net /

공개